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3
----------	-----

제출년월일 : 1993.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91. 7. 19 충청북도직제규칙개정(제1779호)으로 조례개정

□ 주요골자

- 직제개편에 따라 농어촌개발국장, 농림수산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이 당연직위원으로 추가 및 개편
- 학식 및 경험이 있는 전문위원의 범위를 관광 및 환경부문을 포함시킴.
- 도시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도시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도시과를 도시계획과로 명기하도록 개정

□ 근거법령 : 충청북도직제규칙 제1779호

□ 첨부

1.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규 발췌 1부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농림국장및건설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를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농어촌개발국장, 농림수산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중 "부단장은 건설국장"을 " 부단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학식경험이 있는자라함은 공업, 수산업, 광업, 건설및경제, 사회, 지리등의"를 "학식경험이 있는자라함은 공업, 수산업, 광업, 건설, 관광, 경제, 사회, 지리, 환경등의"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간사는 도시과장"을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시과"를 "서기는 도시계획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행	정
안	안
<p>제2조(조직)</p> <p>③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u>농림국장</u> 및 <u>건설국장</u>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p> <p>제7조의2(지방조사연구단)</p> <p>② 지방조사연구단의 구성은 단장 1인 및 부단장 1인과위원5인이내로 구성하되 단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단장은 <u>건설국장</u>이 되며.....</p> <p>제8조(전문위원)</p> <p>② 제1항의 학식 경험이 있는자라 함은 공업, 수산업, 광업, <u>건설 및 경제 사회, 지리</u>등의 각 부문의</p> <p>제10조(간사및서기)</p> <p>② 간사는 <u>도시과장</u>이 되고 서기는 <u>도시과</u> 지역계획계장이 된다.</p>	<p>제2조(조직)</p> <p>③ <u>농어촌개발국장, 농림수산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u></p> <p>.....</p> <p>제7조의2(지방조사연구단)</p> <p>② <u>건설도시국장</u>.....</p> <p>.....</p> <p>제8조(전문위원)</p> <p>② <u>건설, 관광, 경제, 사회, 지리, 환경</u>등.....</p> <p>.....</p> <p>제10조(간사및서기)</p> <p>② . . . <u>도시계획과장</u>이 <u>도시계획과</u></p>